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연구산업의 세부 업종별 범위(제2조 관련)

구분	세부 업종	범위
1. 주문 연구 산업	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물리, 화학, 생물학, 농림수산학, 수의학, 의·약학, 그 밖의 자연과학(수리통계학, 전산학, 기상학, 지질학, 해양학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나. 공학 연구개발업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화학공학, 컴퓨터공학, 그 밖의 공학(조선공학, 건축 및 토목공학, 핵공학, 항공공학, 금속 및 재료공학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다. 융합 연구개발업	특정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 분야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학문이 융합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라. 시험·검사 및 분석업	연구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시험, 검사, 측정 및 분석 등에 관한 업무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2. 연구 관리 산업	가. 연구개발 기획 및 과제관리업	연구개발 관련 정책·전략 수립, 사업·과제 기획, 기술·시장 조사 및 컨설팅, 연구개발 과제 관리(진도 관리, 연구비 정산 등)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나. 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지원업	지식재산권 취득·관리·활용, 기술 이전·거래, 기술 투자·융자, 기술 사업화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다. 연구개발제품 디자인업	시제품 등 연구개발제품의 기능 및 외관 등에 관한 설계 및 디자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라.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업	연구인력을 선발, 알선, 공급하거나 연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마. 연구실 안전관리업	연구실 사고 예방·대응,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3. 연구	가. 광학·전자영상장비	연구용 망원경, 현미경, 카메라·영상처리장

장비 산업	개발업	비, 광과 발생·측정장비, 방사선 발생·측정 장비, 이미지분석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나. 화합물 전처리·분석 장비 개발업	연구용 바이오 제조·분석 장비, 분리정제장 비, 분리분석장비, 분광분석장비, 질량분석장 비, 입자분석장비, 전기화학분석장비 등을 개 발하는 산업
	다. 물리적 측정장비 개발 업	연구용 온도·열·습도·수분 측정장비, 길이 ·위치 측정장비, 시간·주파수·속도·회전 수 측정장비, 질량·무게·부피·밀도 측정장 비, 힘·토크·압력·진공 측정장비, 음향·소 음·진동·충격 측정장비, 유체유량역학 측정 장비, 표면특성 측정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라. 그 밖의 연구장비 개 발업	광학·전자 영상장비, 화합물 전처리·분석 장 비, 물리적 측정장비 외 연구장비를 개발하는 산업
	마. 연구장비 유지·보수 업	연구장비의 유지 및 보수를 지원하는 산업
4. 연구 재료 산업	가. 연구용 물질·시약 개 발업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되거나 연구개발의 대상 이 되는 유기, 무기, 바이오 물질·시약을 개 발하는 산업
	나. 연구용 기구 개발업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되는 기구 및 소모성 자 재를 개발하는 산업
	다. 그 밖의 연구재료 개 발업	연구용 물질·시약, 연구용 기구 외 연구재료를 개발하는 산업